

1. 개정 이유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설치법」(법률 제683호, 1961. 8. 17. 공포·시행)에 따라 도입되어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60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별정우체국의 지정 시 기간 명시(안 제3조제4항 신설)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지정일부터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어 정년에 이르러 당연 퇴직하게 되는 날과 지정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함

나.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국가로부터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등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는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함

다. 별정우체국의 지정 취소 시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정부의 계획으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함

라. 별정우체국의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안 제15조제4항, 안 제15조제5항 신설)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시 보상기준을 정당한 보상에서 청사시설의 손실에 관한 보상과 업무수행 수수료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 산정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 근거 마련(안 부칙 제5조 신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제4조제2호에 따라 국장을 추천하는 경우에 추천사유와 자격요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지정일부터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어 정년에 이르러 당연 퇴직하게 되는 날까지
2. 지정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정인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국장은 제외한다)”를 “(국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이 취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

제15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
2. 지정이 취소되어 상실되는 제13조에 따른 업무수행수수료에 대한 보상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상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산정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우체국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의 국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거나 그 지정을 승계받은 피지정인의 경우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제5조(피지정인의 국장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국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거나 그 지정을 승계받은 피지정인의 국장 추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피지정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국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국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u> 1. <u>지정일부터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어 정년에 이르러 당연 퇴직하게 되는 날까지</u> 2. <u>지정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u> <u>진</u> <u><삭제></u></p>
<p><u>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u></p>	
<p><u>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u> 1. <u>피지정인</u> 2. <u>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u></p>	<p><u>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정인을 국장으로 임용한다.</u></p>
<p>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 <u>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u></p>	<p>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 <u>직원(국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현행	개정안
<p>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5조(지정의 취소) ① ~ ③ (생략)</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정당한</u>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u>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u>1.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하는 경우</u></p> <p><u>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이 취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지정의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p> <p><u>1.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u></p> <p><u>2. 지정이 취소되어 상실되는 제13조에 따른 업무수행수수료에 대한 보상</u></p> <p>⑤ 제4항에 따른 보상의 구체적인</p>

현행	개정안
	<u>지급기준, 산정방법과 절차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